#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425 제출연월일: 2024. 12. 12.

제 출 자:정 부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수중레저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수중레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"휴업‧폐업 또는 재개업하려는"을 "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(30일 이상 휴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하려는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휴업ㆍ폐업 등의 신고) ①	제18조(휴업·폐업 등의 신고) ①
수중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	
기간 중에 <u>휴업</u> ㆍ폐업 또는 재	<u>30일 이상 휴업하거나</u>
<u>개업하려는</u> 경우에는 해양수산	폐업 또는 재개업(30일 이상 휴
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	업 후 재개업하는 경우로 한정
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	한다)하려는
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